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나614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가소107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7,832,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92,80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서 별지 표 '차용일'란 기재 날에 별지 표 '차용금액'란 기재 돈을 차용하고, 별지 표 '변제일'란 기재 날까지 또는 그날에 별지 표 '변제금액'인 원리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변제하거나 한꺼번에 변제하였다.

2)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별지 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하였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서 반환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서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반환해야 할 돈이 없다.

3. 판단

1)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여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하였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1) 별지 표 기재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832,967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21.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반환의무자인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질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송승훈, 판사 고종영

금전거래내역 및 부당이득금 표

순번	차용일	변제일	이자제한법	지급이자	부당이득금
	차용금액	변제금액	최고이자율	최대이자	
1	2010. 12. 10.	2010. 12. 24.	30%	100,000원	87,672원
	1,000,000원	1,100,000원		12,328원	
2	2011. 1. 10.	2011. 1. 24.		200,000원	175,343원
	2,000,000원	2,200,000원		24,657원	
3	2011. 2. 10.	2011. 2. 24.		200,000원	175,343원
	2,000,000원	2,200,000원		24,657원	
4	2011. 2. 28.	2011. 3. 2.		4,000원	3,507원
	200,000원	204,000원		493원	
5	2011. 3. 10.	2011. 3. 24.		300,000원	263,115원
	3,000,000원	3,300,000원		36,885원	
6	2011. 4. 15.	2011. 5. 2.		900,000원	860,164원
	2,700,000원	3,600,000원		39,836원	
7	2011. 5. 5.	2011. 8. 2.			0원
8	2012. 11. 19. ²⁾	2013. 10. 26.		3,050,000원	1,446,505원
	3,020,000원	6,070,000원		1,603,495원	
9, 10 ³⁾	2019. 02. 13.	2019. 2. 26.	24%	500,000원	440,165원 ⁴⁾
	6,500,000원	7,000,000원		59,835원	
11	2019. 3. 8.	2019. 3. 15.		500,000원	463,279원
		7,000,000원		36,721원	
	13,000,000원	2019. 3. 22.		500,000원	431,148원
		7,000,000원		68,852원	
12	2019. 3. 22.	2019. 3. 29.		500,000원	463,279원
		7,000,000원		36,721원	
	13,000,000원	2019. 4. 5.		500,000원	463,279원
		7,000,000원		68,582원	
13	2019. 4. 5.	2019. 4. 12.		500,000원	463,279원
		7,000,000원		68,582원	
	13,000,000원	2019. 4. 19.			
		7,000,000원			
14	2019. 4. 19.	2019. 12. 16.			0원
		1,000,000원			
		2020. 7. 6.			
		1,000,000원			
		2020. 10. 20.			
		1,000,000원			
		2020. 11. 4.			

	13,000,000원	2,000,000원			
		2020. 11. 12.			
		1,000,000원			
		2020. 12. 31.			
		1,000,000원			
		2021. 4. 3.			
		1,000,000원			
		2021. 4. 12.			
		1,000,000원			
		2021. 9. 18.			
		1,000,000원			
15. 16. 17	2021. 5. 6.	2021. 6. 3.		2,860,000원	2,560,168원
		2,000,000원			
	5,000,000원	2021. 6. 10.			
		2,000,000원			
	2021. 5. 18.	2021. 6. 17.			
		2,000,000원			
	1,990,000원	2021. 6. 24.			
		2,000,000원			
	2021. 5. 27.	2021. 7. 1.			
		2,000,000원			
	2,150,000원	2021. 7. 8.			
		2,000,000원			
합계					7,832,967원

2) 원고는 '2012. 1. 19.'이라고 하나, '2012. 11. 19.'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23. 5. 3. 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700만 원이 2019. 2. 13. 자 차용금 650만 원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하였다.

4) 원고는 2023. 5. 3. 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부당이득금 441,165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440,165원'이 맞는다.

1) 원고는 별지 표 '변제일'란 기재 날까지 별지 표 '변제금액'인 원리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변제한 경우 '최종변제일'을 기준으로 전체 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반환을 구하는 등, 원고의 계산방법이나 반환 청구 금액 범위 등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다.